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 회를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회는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문탐구와 함께 건전한 학생활동을 주도하여 참다운 지성인이 되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 시건강을 책임질 전문인으로 육성하며 회원 간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칭한다.

제 4조 : (회원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재학생으로 칭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기간동안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회원은 정회원을 칭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휴학생으로 정한다.

3. 본 회의 명예회원은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졸업생으로 정한다.

제 5조 : (소재)

본 회는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내에 둔다.

제 6조 : (사업 및 활동)

1. 본 회를 위한 활동 중 학과 활동 및 문화 체육활동

2.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활동

3. 회원 간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4. 본 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 활동 및 기타 활동

제 7조 : (회원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각 기구의 의결권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학회의 활동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학회 소집 요구 및 발언권,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4. 본 회를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권리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원은 학회칙 및 기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 학회 활동에 소요되는 학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 (활동범위)

본 회의 활동은 학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 (기구)

본 회에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부, 총무부, 체육부, 기획부, 홍보부, 사무부, 업무지원부, 대의원을 둔다. 각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및 각 국 임원들은 학생회 산하에 둔다.

제 2 장 총 회

제 10조 :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1조 : (구성)

총회는 본 회의 모든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학회장이 된다. 단, 학회장 또는 부학회장의 탄핵결정에 관한 회의 시에는 대의원장이 대행한다.

제 12조 : (권한)

1. 총회는 학생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이 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총회는 본 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는다.

4. 학회장과 부학회장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3조 :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종강일 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공고는 실시 최소 3일전에 하며, 반드시 정족수의 원칙을 따른다.)

2. 임시총회는 학회장, 부장단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3. 비상총회는 정회원 2/3 이상의 연서가 있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 14조 :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2. 총회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연속 2회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각 학년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부장단회에 의결할 수 있다.

(단, 전원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학우들의 동의가 있을시 참석인원이 미달되어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5조 : (의장)

1. 본 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2. 정기총회의 경우 학회장 결의시 부학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임시총회의 경우 학회장 결의시 그 임시총회는 무산된다.

제 3 장 학회장 및 부학회장

제 16조 : (지위)

1. 학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부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3. 학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대학 안경광학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학회장 유고시 부학회장이 대행한다.

제 17조 : (자격)

1. 학회장은 3학기를 이수하고 4학기 이상 이수할 자로 하며, 부학회장은 2학기 이상 이수할 자로 한다.

2. 학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 18조 : (임기)

학회장단(학회장, 부학회장) 및 부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9조 : (권한대행)

학회장단이 모두 결위 시에는 부장단 중 기획부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 : (업무 및 권한)

학회장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개강 전 부서별 부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각 부서의 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2. 총회 및 부장단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부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부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개정안 발의를 한다.

5. 본 회의 의결 사항 중 학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6. 학회장은 그 해 일정에 맞게 각 부서를 조절할 권리를 가진다.

7. 학회장은 각 부서의 활동을 보고 받고 그에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제 21조 : (신분보장)

학회장 및 부학회장은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4 장 부장단회

제22조 : (지위)

부장단회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제23조 : (구성)

부장단회는 학회장단, 학술부장, 총무부장, 체육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사무부장, 업무지원부장, 총무차장, 체육차장, 기획차장, 홍보차장, 사무차장, 업무지원차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

제24조 : (의장)

부장단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한다. 단, 학회장 또는 부학회장의 탄핵발의 심의시에는 대의원이 대행하며, 탄핵심의 대상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 : (업무)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및 학회의 재반 사업을 학회장의 총괄 하에서 진행한다.

제26조 : (소집)

부장단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학회장이나 부장단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 : (의결)

부장단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 (기타)

부장단회는 제 23조에 명시된 회의참석자 외의 타인에게 감시받지 아니한다.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명시한다.

제 5 장 각 부서

제29조 : (지위)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0조 : (구성)

본 회의 재반 업무를 위해 학술부, 총무부, 체육부, 기획부, 홍보부, 사무부, 업무지원부를 둔다.

제31조 : (임원의 임명)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 학회장의 권한으로 각 부장 및 차장의 임명권을 가진다.

제32조 :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부

①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학술적인 내용을 담당한다.

②학술제를 주관한다.

③학술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담당한다.

나. 총무부

①본 회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보고를 한다.

②본 회의 운영 자금, 비품을 관리한다.

다. 체육부

①각 학생들의 단합을 담당한다.

②체육활동을 통하여 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 기획부

①본 회의 운영 및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②사업 계획 및 점검을 담당한다.

③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및 활동을 조정한다.

마. 홍보부

①본 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②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고한다.

바. 사무부

①본 회의 문서 및 서류를 관리 담당한다.

②본 회의 행사 사무관리 및 지원한다.

사. 업무지원부

①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②본 회의 공고 및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제 6 장 대의원회

제33조 : (지위)

본 회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제34조 : (구성)

각 학년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장 1명 (4학기 이상 이수할 자), 부대의원장 1명 (2학기이상 이수할 자)으로 정한다.

제35조 : (업무 및 권한)

1. 회계업무와 감사 등 재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업무는 다른 회원의 간섭을 불허한다.

2. 본 회의 감사 기구인 동시에 각 학년의 감사를 한다. 마지막 정기총회 7일 전에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학회장에게 감사 자료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결과의 발표는 총회에서 대의원장이 보고한다.

제 7장 재 정

제36조 :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학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학회비의 징수 및 보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본 회의 모든 경비는 학회를 위한 사업에 공정하게 사용한다.

제37조 :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2. 진 항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를 1기로 하여 년 2기로 나누고,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수행한다. 회계연도의 1, 2월은 제 1기에 포함시킨다.

제 38조 : (회비)

1. 학회비는 정회원인 경우 금 이십칠 만원(8학기분)을 일시불로 낸다. 단, 사정이 있는 자는 총무부장에게 보고하여 통과되면 분납으로 납부한다.

2. 학회비는 부장단회에서 편성, 책정하고 대의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3. 편입생의 경우, 졸업선불비+ 해당 학번 학회비의 50%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4. 자퇴의 경우 남은 학기 수만큼 1학기당 3만원의 학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 39조 : (예산집행)

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무부장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40조 : (결산보고)

총무부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친 후, 학기 중 마지막 총회에 결산 보고를 한다.

제 41조 : (회계감사)

대의원회는 결산 승인 전에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제 8장 선 거

제 42조 : (선거)

본 회의 선거는 일반 민주주의 선거원칙인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43조 : (선거권)

본 회의 정회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제 44조 : (선거시기)

학회장의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2학기 중 실시하며, 부장단회에서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한다.

(학년 대표는 매 학기말 학년대표가 소집하여 학년 전체에서 선발한다.)

제 45조 : (선거 방법)

학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장과 부학회장 입후보자는 학과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학회장과 부학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학회장과 부학회장은 런닝메이트 제도로 함께 출마한다.

4. 본 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한다. (학년 대표도 이와 동일)

5. 과반수의 투표가 안되거나. 단일 후보 시 투표자 2/3 이상의 목표가 안된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6조 : (보궐선거)

1. 학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되거나 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잔임 기간이 10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0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장단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학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 학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제 47조 : (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9장 회칙 개정

제 48조 : (발의)

본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정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부장단회의 1/2 이상의 발의

제 49조 :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회에 상정되면, 총회의 의결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제 50조 : (공표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안은 7일 이내에 학회장이 공표하여야 하며, 학회장 공표 후 7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칙 개정시 수정 연도를 기록한다.

>>>>> 부칙

제 1조

시행 세칙의 개정은 관련 회의에서 확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조

본 회칙의 명시된 기구는 우선적으로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

제 3조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력을 가진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와 유권해석에 따른다.

>>>>> 행사

제 1조

모든 행사는 전원 참석을 목표로 한다. 단 불참 시에는 3일전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 2조

불참시 참가비 전액의 50%를 낸다. 3일전 사유서 미제출시 참석으로 간주 참가비 전액을 낸다.

참가비가 없는 행사는 불참비가 없다. 단, 학년 대표는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시 사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3조

학년별 행사시 참가자가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강파티 10만원, 엠티 5만원)

제 4조

행사에 대한 공고는 5일 전에 한다.

제 5조

행사 참여의 예외

4학년은 모든 행사를 자율참여 한다

혼인한 자는 모든 행사를 자율참여 한다.

개 정

2009년 개정. 2009년 안경광학과 학생회.

개 정

2017년 개정. 2017년 안경광학과 학생회.